

## 2018년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http://cafe.daum.net/jangwon96> (다음카페)

[www.jangwon365.com](http://www.jangwon365.com)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 금요일부터)

### 공무원장원급제 행정학 해설 정명재(7급·9급 합격 5관왕)

1. 행정이념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롤스(Rawls)의 최소최대 원칙(minimax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 ②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 ③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행정의 참여와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 바 있다.

정답 : ① 설명은 맞았으나 영어 표현이 잘못 되었다. 아주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롤스(Rawls)의 최소최대 원칙은 max-min principle 이다.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다.

2. 로즈(Rhodes)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이다.
- ② 이슈네트워크의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 ③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 ④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유사하며,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정답 : ④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정책공동체)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	국가 자신도 정책 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 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자로서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 1. 정책 네트워크 개념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는 특정한 정책을 둘러싸고 각기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이들 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원주의, 철의 삼각, 이슈네트워크 등으로, 유럽에서는 조합주의 등으로, 영국에서는 정책공동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참여정도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유형, 상호작용행태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유형을 종합·정리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 2. 유형

### 1) 참여정도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유형

#### ① 정책커튼모형

정책커튼모형(policy curtain)은 Yishai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서, 정책과정이 정부기구내의 권력장악자에 의해서 독점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외부의 행위자에 의한 요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이들의 요구는 정책결정의 장으로 진입되는 것이 차단되어 정책결정이 독점되고 외부로부터의 참여는 전적으로 배제되는 행태로서, 이 경우 정부엘리트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율적이며 외부세력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하위정부모형

어떤 특정 정책분야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정기관의 행정관료, 입법자들과 이들의 보좌관, 이익집단의 대변자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위정부모형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은 각각의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상호지지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그들이 상호작용과정에서 행정관료의 역할은, 특히 입법기관의 입법자들과 보좌관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조언을 제시하며, 이러한 지식과 조언을 바탕으로 관료들은 정책결정의 권한을 공유한다. 각 정책영역별로 하위정부에 참여하는 이익집단들의 수는 많지 않으며, 공통된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는 갈등관계가 아닌 것이다.

### ③ 정책공동체모형

정책공동체모형(policy community model)이 하위정부모형과 다른 점은 정책공동체의 구성원이 관료들, 개개 정치인과 그들의 막료, 조직화된 이익집단과 그 지도자 및 막료,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는 대학·연구기관·정부 내의 전문가들로서, 하위정부모형의 구성원에 전문가집단이 추가된 것이다.

각 분야별 정책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호 접촉하며, 그 과정에서 각기 자기의 정책분야에서는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해결방안들이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일련의 공통된 이해와 공동체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정책문제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규범에는 동의하지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아이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공동체모형은 참여자들 간의 합의, 의견일치, 협력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하위정부모형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④ 이슈네트워크모형

Hecl(1978 : 88)는 하위정부모형에 관한 비판을 토대로 이슈네트워크모형(issue network model)을 제시하였다. 그는 하위정부모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폐쇄적 삼각관계만을 보는 경우, 정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Hecl은 정책결정이 규모가 훨씬 큰 이슈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슈네트워크는 공통의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대규모의 참여자들을 묶는 지식공유집단을 말한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하위정부모형의 경계와는 달리 이슈네트워크의 경계는 가시화하기 어렵고 잘 정의되지 않는다. 참여자들의 진입·퇴장은 쉬운 편이며, 네트워크의 경계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④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답 : ②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_\_\_\_\_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 2018.1.17. 시행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김영관법 개정 내용**

이번 개정(2018.1.17.)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 이번에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과 보완 신고기간 연장

중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

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4. 라스웰(Lasswell)의 정책지향 (policy orientation)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 ③ 정책적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④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장려한다.

정답 : ②

정책학은 기술적(記述的), 설명적 성격인 과학성(science)과 규범적, 처방적 성격인 기술성(art)라스웰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탐구를 지향한다. 라스웰의 지식은 ㉠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으로 구분하여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나 1950년대 미국의 행태주의 혁명에 의해 밀려났다가 1960년대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면서 드로(Dror)에 의해 1960년대 말 재출발하게 된다.

㉠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
사회과학과 심리학 적용	규범적, 처방적 지식으로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지식

5.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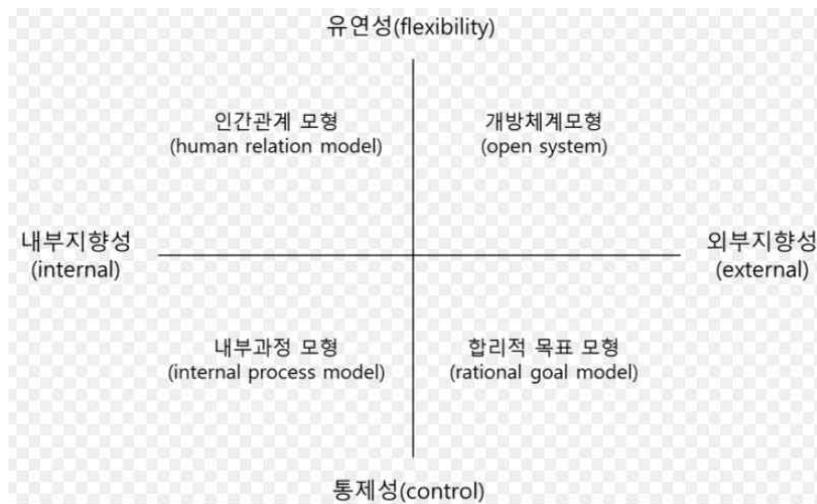
- 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이해된다.
- ③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등 다양한 책임성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답 :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노젓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닌 봉사라고 본다. 행정은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6. 조직효과성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에서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의 목표를 강조하는 관점은?

- ① 개방체제 관점
- ② 내부과정 관점
- ③ 인간관계 관점
- ④ 합리적 목표 관점

정답 : ①



경쟁가치모형의 4가지 모형은 합리적 목표모형, 내부과정모형,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이며, ㉠ 합리적 목표모형은 조직구조의 통제성과 외부지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과 목표설정을 조직목표달성의 수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적 목표에 의해 효과성이 측정되며, 이를 위해 경영자는 시장상황과 불확실성에 조직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분권화, 전문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게 된다(Cooper외,1993). 따라서 경영혁신활동 과정에는 생산성증가를 위한 기획, 목표설정, 지휘체계구축 등이 주요 업무로 포함되게 된다(이황원, 2009). ㉡ 내부과정모형의 조직효과성 기준은 안정성(stability)이다. 수단-목적의 가정은 관례화(routinization)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모형에서의 조직풍토는 위계질서(hierarchy)를 중시하고, 모든의사 결정은 현정하는 규정(rules), 구조(structures), 관습(traditions)에 의존한다. 내부과정모형과 합리적목표 모형은 상호보완적인 모형이다(Quinn, 1988:53, 김정필 2006에서 재인용). ㉢ 인간관계모형은 조직구조의 유연성과 조직내부 지향적인 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원의 결속과 사기증진을 수단으로 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조직의 공식적 구조(조직, 직위, 절차)보다는 조직구성원간의 권력, 지위, 의사소통 등 조직의 비공식적 형태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조직구성원은 개인별로 다양한 관심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서 구성원상호간 결속관계로 만들거나 조직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주요 기제라는 것이다(이황원, 2009). ㉣ **개방체제 모형**은 조직구조의 유연성과 외부지향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직의 유연성과 대응성 향상을 수단으로 하여 **조직성장, 자원획득, 외부의 지지 등의 확보가 최종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조직의 외부환경은 조직의 생존과 유지에 필요한 자원, 에너지,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원천이며 조직구조, 생존전략 등 조직형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황원, 2009).

7.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였다.
- 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었다.
- ㄷ.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 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
- ㄹ.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하였다.
- ㅁ.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정답 : ②

- ㄴ.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 소방청은 외청으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었다.
- ㄹ.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하려 했으나 무산되어 아직 계류 중이다.

8.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 ① 주민소환제
- ② 조례제정개폐청구제
- ③ 주민투표제
- ④ 주민소송제

정답 :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 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다.

\* 암기법 : 조(례). 표. 송. 환

9.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 ③ 법조문을 살펴보고 자주 읽는 연습을 하자.

주민투표의 발의와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구별해야 한다.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지방자치법 (5번 읽기!)**

14조(주민투표) ①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투표법**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

발의할 수 없다.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0.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주류 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20년대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 ② 미국 태프트위원회에서 사용한 절약과 능률은 행정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됐다.
- ③ 브라운위원회에서 제시된 능률적인 관리활동은 POSDCoRB로 집약된다.
- ④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New Deal) 정책 이후에도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정답 : ④ 관리과학은 1920년대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는 경제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행정국가가 등장하면서 정통적 행정학에 대한 반발기로 표현된다.

**1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① 포자 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본다.
- ③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 가정을 의제설정과정의 설명에 적용한다.
- ④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 정책 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정답 : ④

### 1. 포자모형(孢子模型)

곰팡이의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군사체로 발전하지 못하듯이 영향력이 미미한 집단의 경우 **이슈촉발장치(triggering device)**가 없으면 평상시에는 정부의제로 채택되지 못한다는 모형을 말한다.

### 2. 흐름모형

Kingdon의 흐름, 창모형이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능동적 참여자와 의제 및 대안의 논의과정이 의제형성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상호독립된 흐름(창모형에서는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 흐름 중에서 정치의 흐름을 중시,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이 어떤 계기에 의하여 우연히 결합되어 정책의제화한다는 모형을 말한다.

### 3. 이슈관심주기 이론

Downs(1972)의 이슈관심주기 이론은 중요한 국내 문제에 대해 일반 대중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슈의 잠복기, 이슈의 발견과 표면화, 관심의 현저한 증가와 비용인식, 대중 관심의 점진적 감소, 관심의 쇠퇴를 진행한다고 본다.

### 4. 동형화 이론(Isomorphism Theory)

DiMaggio와 Powell에 따르면 어떠한 조직이든 생성 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유형으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동질화의 압력이 나타나게 되어 동형화가 이루어진다. 의제설정 과정도 이러한 동형화의 압력을 받는다. 정책의제의 경우 어떤 정책의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 정당성의 수준에 근거해서 정책의제가 채택될 수밖에 없다. 동형화 이론을 통해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설명하면, 첫째,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아이디어의 전파를 의미하는 **정책전이(policy transfer) 현상을 정부들 간의 동형화로 이해할 수 있다. 동형화에는 모방적, 강압적, 규범적(전문성)인 방법이 있다.** 둘째, 정당성 확보와 강화는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준다. 모호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정책과정의 첫 단계인 정책의제설정에서 정책당국은 관련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제를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책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이라도 이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약하거나 과거의 선례가 없다면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발전에 시급하지 않은 정책의제라도 이를 다른 국가에

서 널리 채택할 경우 이미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의제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특별한 부담 없이 이를 채택할 수 있다.

## 12.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문제에 대한 통계지표의 오류는 바람직한 의제설정을 어렵게 한다.
- ② 크렌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의제화한다고 한다.
- ③ 우리나라의 1960년대 경제제일주의는 많은 노동문제를 정부의제로 공식 검토되지 않게 하였다.
- ④ 정치체제의 가용자원 한계는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정답 : ② 나머지 지문을 읽어 보면 틀린 부분이 없다. 소거법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② 크렌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의제화한다고 한다. ☞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가 되지 못한 것은 비용은 특정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편익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므로 소수 기업들이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반발하는 상황이라 설명한다. (월슨의 기업가적 규제정치 상황에 해당)

13. 신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②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③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이다.
- ④ 예산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답 : ②

공무원 주간 학습지 핵심 41. 신성과주의예산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결과중심예산으로 1990년대 OECD국가에서 도입한 것이다. 국정 전반의 성과관리체계를 강조하여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1950년대 행정국가에서는 성과(output)주의를 목표로 하였지만, 1980년대 신행정국가에서는 결과(outcome)를 성과로 파악한다.

성과주의(1950년대의 행정국가)	신성과주의(1980년대 신행정국가)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로 통제와 감독을 중시한다. 단순히 산출인 output을 강조한다. -예산 개혁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며,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념을 취한다. 성과인 outcome 강조한다. -예산 개혁의 범위가 좁다(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만 활용하기 때문)

**14. 행정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과는 구분된다.
- ② 지적 능력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 ③ 실행적 능력은 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능력을 포괄한다.
- ④ 행정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요인들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정답 : ① 나머지 지문에 틀린 것이 없다. 소거법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을 포함한다.

**15. 정책의 유형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로위(Lowi)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 있다.
- ③ 로위(Lowi)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한다.
- ④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가 용이해졌다.

정답 :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은 정책을 상징, 추출, 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였고 조세 및 부담금은 여기에서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유사문제를 소개하니 연습용으로 반복해 읽기를 바란다.

<기출유제>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014 지방 9급

- ① 배분정책-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간 갈등이 발생한다.
- ② 규제정책-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 ③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④ 구성정책-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해설: ① 배분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책수혜집단은 특정적이고 정책비용 부담집단은 불특정이어서, 특히 불특정적인 비용부담 집단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 약해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간의 갈등이 적고 조용한 편이다.

<기출유제>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 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4 국가 7급, 2013 지방9급 유사, 2001 국가 7급 유사

- ㉠ 추출정책- 부실기업 구조조정
- ㉡ 상징정책- 노령연금제도
- ㉢ 규제정책- 최저임금제도
- ㉣ 구성정책- 정부조직개편
- ㉤ 분배정책- 신공항건설
- ㉥ 재분배정책-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④ ㉢,㉣,㉤

- ㉠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재산권행사의 제약하는 규제정책이다.
- ㉡ 노령연금제도는 복지정책인 재분배정책에 해당된다. 상징정책은 국가 문장이나 로고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기출유제>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밀어주기 (Log-rolling)와 나눠먹기(Pork-barrel)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유형은? 2007 국회 8급

- ① 배분정책
- ② 규제정책
- ③ 재분배정책
- ④ 구성정책
- ⑤ 추출정책

해설: ① 배분정책상 결정과정에서 정책을 둘러싼 정면대결 (Zero-sum)보다는 돼지 구유통 정치·갈라먹기 정치나 상부상조(Log-rolling)이 이루어진다. 즉, 구유통 정치는 배분정책에 있어서 수혜집단들이 서로 권리나 이익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 배정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이 선거구민에 대한 선심성 사업을 상호 협력하에 배분하는 현상과 관련되며,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투표담합(Log-rolling)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출유제>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서비스를 나누어주는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2013 국가 7급, 2010 서울 9급 유사, 2008 국회 8급 유사

-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추구하는 정책
- ② 그린벨트 내 공장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 ③ 계층 간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해설: 답은 ①

- ②는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 ③은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 ④는 추출정책에 속한다.

참고) 주택자금의 대출은 분배정책에 속하나, 임대주택의 건설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2010 서울 9급, 2008 국회 8급) 임대주택의 건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속하기에 따라서,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기출유제>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지방 7급**

- ① 표준운영절차나 사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②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 ③ 누진세, 사회보장, 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③ 누진세, 사회보장은 재분배 정책의 사례이나, 사회간접자본정책은 배분정책이다.

**<기출유제> 다음의 정책분류 가운데 Almond와 Powell이 사용한 분류는?**

**2011 서울시 9급**

-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 ③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 ⑤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해설: ③ Almond와 Powell은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몬드 상추분류(암기법)**

16. 성과평가의 방법과 모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논리모형(Logic Model)은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시한다.
- ㄴ. 성과표준평정법(Performance Standard Appraisal)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수준을 명시한다.
- ㄷ.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내부과정의 관점보다는 고객 관점의 평가방법이다.
- ㄹ. 행태관찰평정법(Behavioral Observation Scales)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한다.

- ① ㄴ, ㄹ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①

ㄱ. 논리모형(Logic Model)은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시한다. ☞ 논리모형은 요소들과 정책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 정리하는 모형으로 과정을 중시한다.

ㄷ.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내부과정의 관점보다는 고객 관점의 평가방법이다. ☞ BSC는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의 균형을 추구한다.

즉, 재무 · 고객 · 내부 프로세스 · 학습과 성장을 요소로 한다.

공무원 주간 학습지 행정학 (공무원 장원급제 출간)

테마3. 근무성적평가제

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말한다.

■ 근무성적평정의 유형

1.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도표식 평정척도법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평정요소(실적, 능력, 태도)를 나열하고 다른 한편에 각 평정요소마다 그 우열을 나타내는 척도인 등급을 표시한다. (직무분석에 기초하기보다는 직관을 바탕으로 평정요소가 결정되어 평정표 작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고, 연쇄효과(hallo effect)나 집중과·관대화 경향 등 오류발생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예 : 유아가 스스로 이를 닦습니까?

수평선이나 명암 등을 이용한 도표식평정척도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강제배분법 :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관대화 경향이나 집중화 경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미리 평점점수의 분포비율을 정해 놓는 방법이다.

㉢ 체크리스트법(Probst식 평정법) :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체크리스트)을 미리 작성하여 이 목록에 가, 부(예, 아니요)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 목표관리 평정법(MBO) : 조직계층의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협의(참여)를 통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목표달성에 관해 의견교환을 통해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환류)하는 방법이다.

㉤ 서열법 : 피평가자간의 근무성적을 서로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 중요사건기록법 : 근무평정기간 중에 일어난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중심으로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행태기준척도법(BARS : Behavioral Anchored Rating Scale)

중요사건 기록법과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결합한 방식으로 두 방법의 장점을 강화한 것이다.

주관적 판단 배제를 위해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 과업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해 이상적인 과업 형태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로

등급 구분된 평정표를 사용한다.

**1. 근무성적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17년 서울시 9급)**

- 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가 실시된다.
- ③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금지된다.

정답 : ③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이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무성적평가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실시하며, 4급 이상에게 실시되는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 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한다.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 및 면담이 인정된다.

**2.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체결한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 ② 정부의 근무성적평정방법은 다원화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③ 행태기준척도법은 평정의 임의성과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한 방식이다.
- ④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연쇄적 착오라 한다.

정답 : ① 근무성적평정은 5급 이하의 일반직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성과계약 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3.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과 그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년 지방직 7급)

- ① 행태관찰척도법은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갖는 등급과 등급 간의 모호한 구분과 연쇄효과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자인 감독자와 피평정자인 부하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하기 어렵고,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위험이 있다.
- ③ 강제배분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 ④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혼란을 갖게 된다.

정답 :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인간적 특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찰된 개인의 행태를 중심으로 평정하기 때문에 행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나 평정결과에 대한 평정대상자와의 상담 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행태기준척도법(BARS)과 행태관찰척도법(BOS) 비교**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BARS)	개 념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주요 과업을 선정하여 각 과업분야별로 가장 이상적인 과업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식(중요사건기록법과 도표식평정척도법의 결합)
	장 점	평정척도 설계과정에서 평정 대상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단 점	평정 대상자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호배타성)
행태관찰척 도법(BOS)	개 념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의 상호 배타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한편에는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사례를 제시하고(평정항목), 다른 한편에는 사건의 빈도수를 표시하는 척도로 구성하는 방식(행태기준평정척도법과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결합)
	장 점	평정자의 주관울 줄일 수 있다
	단 점	등급과 등급 간의 구분 모호, 연쇄효과가 발생 우려 등이 있다

☞ **행태관찰척도법 (BOS : Behavioral Observation Scales)**

■ **행태기준척도법 (BARS) 과 행태관찰척도법 (BOS)**

행태기준척도법 (BARS)	행태관찰척도법 (BOS)
①도표식평정척도법 + 중요사건기록법 ②평정의 임의성과 주관성 배제	①BARS + 도표식평정척도법과 유사하게 <u>빈도</u> 를 척도로 행태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②행태기준척도법 (BARS)의 단점인 항목 간 <u>상호배타성</u> 을 극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표식평정척도법처럼 등급 간 구분이 모호하고 연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행태기준척도법 (BARS) 예시**

역량명 : 의사소통	
행동 지표	수준
상대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다.	<input type="checkbox"/> 레벨1
상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input type="checkbox"/> 레벨2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다.	<input type="checkbox"/> 레벨3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으로 대상자를 이해 및 설득시킨다.	<input type="checkbox"/> 레벨4
의사소통 코치 및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input type="checkbox"/> 레벨5

■ **행태관찰척도법 (BOS)**

평정항목	등급(척도)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자주 관찰된다
• 법령이 개정되면 게시한다.	1 2 3 4 5	
• 주의력을 집중하여 대화한다.	1 2 3 4 5	
• 지시받을 때 메모를 한다.	1 2 3 4 5	
• 보고방법이 간단명료하다.	1 2 3 4 5	
• 즉시 보고하지 않는다.	1 2 3 4 5	

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2008년 국가직 9급)

-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한다.
- 각 과업분야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 ① 행태기준평정척도법
-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 ③ 행태관찰척도법
- ④ 체크리스트법

정답 : 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BARS)**은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갖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하는 것으로 **중요사건기록법과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결합**하여 두 방법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5. 다음은 공무원 평정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09년 지방직 9급)

- ㉠ 고위공무원단체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 ㉡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또는 처우 등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조직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 상하 간, 동료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 ㉣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	㉡	㉢	㉣
①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근무성적평정제
③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정답 : ①

6.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해경간부)

- ① 등급의 비교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② 상벌목정에 이용하는데 효과적이다.
- ③ 연쇄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 ④ 평정이 용이하다.

정답 :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가절차가 쉽고 결과의 수치화 및 조정이 용이하다. 그러나 평정의 관대화, 집중화, 연쇄화를 가져올 수 있고, 평정요소의 합리성이 떨어지며, 등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한편에는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 두고, 다른 한편에는 우열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주간학습지 행정학( 공무원 장원급제 출판)**

**테마2. BSC(균형성과관리)**

BSC(균형성과관리): 재무적관점-민간부문에서 중시, 고객관점-정부부문에서 중시, 프로세스(절차)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을 말한다.

1992년 하버드 대학의 Kaplan과 Norton 교수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었다. 그동안의 성과평가가 재무적 관점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비재무적 관점(고객관점, 프로세스관점, 학습과 성장)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BSC의 지표 중 재무적 관점은 민간부문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지난 1년간의 매출이나 순이익 등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후행지표(과거지표)이다.

BSC의 지표 중 학습과 성장관점은 다른 지표(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미래적 관점의 선행지표-공공부문에서 중시되는 관점의 지표)로서 가장 상부구조에 해당한다.

**■ BSC(균형성과관리)의 지표**

1. 재무적 관점 : 민간부문에서 중시하는 과거(후행) 지표
2. 고객 관점 : 공공부분이 중시하는 대외적 지표
3. 프로세스 관점(절차적 관점): 업무처리 관점으로 과정중심 지표
4. 학습과 성장 관점 : 미래적 관점의 선행지표

**1.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지방직 9급)

- ①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의 불만율, 신규 교객의 증감 등이 있다.
-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 ③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

비 차이 등이 있다.

④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제안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정답 : ③ 재무적 관점은 지나간 과거실적을 나타내주는 전통적인 후행지표로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대비차이 등이 있다.

후행지표란 경기변동에 뒤따라 변화하는 지표이고, 선행지표는 경기변동에 앞서 변화하는 지표를 말한다.

### ■ BSC(균형성과관리)

1. 재무적 관점-민간부분에서 중시(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의 후행지표)
2. 고객 관점-공공부분에서 중시하는 대외적 지표(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
3. 프로세스(절차)관점-과정중심 지표(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
4. 학습과 성장 관점-미래적 관점(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의 축적, 정보시스템 구축, 학습동아리 수, 제안건수, 직무만족도 등)

### 2. 다음 중 성과평가시스템 균형성과표(Balnced Score Card : 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국회 8급)

- ①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진다.
- ②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 ③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인 지표들로는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 적법 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 ④ BSC를 공공부분에 적용할 때 재무적관점이라 함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하여 지원시스템의 예산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 ⑤ BSC를 공공부분에 적용할 때는 고객, 즉 국민의 관점을 가장 중시한다.

정답 : ② 균형성과관리인 BSC는 기관의 임무(비전) 등이 하향적으로 제시되고 전략목표와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연계시키는 성과관리전략으로 조직전략의 해석 지침으로 적합하다.

### 3. 균형성과관리(BS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경찰간부)

- ① 하버드 대학의 Kaplan & Norton 교수는 그동안의 성과평가가 재무적 관점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비재무적 관점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한다.
- ③ BSC의 지표 중 재무적 관점은 민간부문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후행지표이다.
- ④ BSC의 지표 중 학습과 성장 관점은 다른 지표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로서 가장 상부구조에 속한다.

정답 : ④ 학습과 성장은 가장 하부구조에 속한다. 그러나 미래적 관점의 선행지표로서 공공부문에서는 중시되는 관점의 지표이다.

반면에, 재무적 관점은 민간부문에서 특히 중시되는 것이다. 지난 1년간의 매출이나 순이익 등으로 후행지표(과거지표)이다.

17.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 ②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한다.
- ③ 행정의 활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정답 :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거버넌스(협치)로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모습이다.

18. <보기>에서 예산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총액계상제도
ㄴ. 이용
ㄷ. 전용
ㄹ. 이월제도
ㅁ. 계속비제도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ㄹ, ㅁ, ㅂ
- ④ ㄴ, ㄹ, ㅁ

정답 : ③ 어려운 부분이니 자주 읽어 보자. 재무행정은 어렵다. 모른다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니 용기를 잃지 말자.

예산의 시기적 신속성	시행방법의 신속성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 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기출유제>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년 교육행정직 9급)

-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 ③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 ④ 예산의 전용은 장-관-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① 계속비는 5년 이내에서 수년간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다.

재정통제	신축성유지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통합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사업비제도	이용(입법과목인 장·관·항 간의 융통) 전용(행정과목인 세항·목 간의 융통) 이체 이월 계속비 예비비 긴급배정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대통령령의 재정 긴급명령권 총괄배정예산 다년도예산(3년 이상 예산 운영)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액계상예산제도 장기근속계약제도

②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 추가경정예산은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이다.

④ 예산의 전용은 장-관-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기출유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서울시 9급)**

① 전용이란 입법과목 상호 간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③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정답 : ① 전용은 행정과목 간 융통이고, 이용이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이다.

<기출유제>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서울시 9급)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지향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지향
- ③ 계획 예산제도 (PPBS) - 기획지향
-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지향

정답 : ④ 영기준 예산은 목표중심이 아니라, 감축, 평가, 우선순위중심의 예산을 말한다.

<기출유제> 다음 중에서 예산개혁의 경향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을 시기순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2013년 서울시 9급)

- ① 통제지향(LIBS) - 관리지향(PBS) - 기획지향(PPBS) - 감축지향(ZBB) - 참여지향
- ② 통제지향 - 감축지향 - 기획지향 - 관리지향 - 참여지향
- ③ 관리지향 - 기획지향 - 통제지향 - 감축지향 - 참여지향
- ④ 기획지향 - 감축지향 - 통제지향 - 관리지향 - 참여지향

정답 : ①



19.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책임성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책임성은 고객만족에 의한 행정책임을 포함한다.
- ③ 법적 책임의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정답 : ④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20.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주무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서울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서울시장은 주무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위 ③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③ 법 조문 문제는 반드시 법 원문을 읽어야 한다.

해설을 보면서 암기하여 하지 말고, 다음에 어디에서 출제될지 모르는 것이니 관련 조문을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 지방자치법

9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6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7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67조, 제171조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 )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